



동방농약(株)부사장 裴 大 漢

I. 머릿말

農藥은 더욱 필요하고, 농약産業은 더 많이 발전되어야 하겠으며, 농약의 安全使用은 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것이다.

농업생산과 소득의 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작물병해충의 방제는 필요

불가결한 것임으로 농약 사용은 비료나 농기계 이상으로 중요시 되나, 毒性和 殘留와 汚染대책에 대한 연구지도와 이해 및 실천이 부족하고 또한 농민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일부 식자들의 무책임한 발표나 언론의 과대 보도등으로 국민을 농약공포증에

결리게 하거나 농약의 생산 및 판매를 죄악시하게 하고도 있고, 또 무농약농법이나 무공해작물의 계약재배가 나오고 농약 亡國論에까지 비약하여 농약企業의 양심마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농약은 약효가 없고, 병해충의 저항성이 심하고, 인축에 대한 위해와 공해의 공범으로 처단받아야 하는 것인가? 선진제국에서도 「안전사용」이라는 간단한 대책으로 무난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생활필수품인 물이나 불, 전기와 석유나 연탄등도 안전관리를 잘못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험하여 왔기에 사고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알고 있다. 의약품이나 식품첨가물은 물론 폐수와 매연등의 위해를 먼저 해결해야 하겠고, 만원 버스속의 담배연기 일소부터라도 우선 선행되었으면 한다.

본문에서는 근년에 심각히 논의되어 온 농약의 독성이나 공해에 관한 시비는 약술하고 앞으로의 농약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긴급히 검토조치되어야 할 병해충방제 제도의 개선책 및 농약관리 행정의 쉐신점과 농약기업의 체질문제 등을 논의함으

로써 재고와 경영난 등의 비정상적 여건하에 있는 제조업체의 난국타개와 농약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II. 病虫害防除의 制度的 改善

기상의 怪變과도 같은 장마와 냉해의 계속으로 미곡 4천만섬의 꿈은 3천만섬 이하라는 흉년으로 깨어졌으나, 그 책임은 사람에게 더 많으며, 식량무기화와 새제도의 80년대에 병해충방제와 농약산업만이 구태의연할 수는 없다. 최근 유관기관이나 업체와 농민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는 농약의 새물결에 대하여 특히 방제제도와 방제방법과 연구지도 분야의 개선점을 요약해 본다.

1. 防除制度的 改善點

수도의 다수성 신품종의 早期, 密植, 多肥 재배의 강행과 官主導의 방제체제를 지양하고 安定위주의 綜合防除의 방향에서 특히 농민자율의 基幹방제를 실천하여야 하겠으나 다음의 개선책이 농민스스로의 기술적 경험위에 이룩될 수 있도록 연구지도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1) 신품종의 다수재배 (병해충의 발생증대)	→	적품종의 안정재배 (종합방제기술의 적용)
(2) 발생예찰의 형식화 (신뢰도 및 경각심 둔화)	→	관찰표 정밀 표본조사 (지역예찰강화와 순보제)
(3) 하행식 농약수급계획 (방제기준 설정 시행)	→	상행식 신청 공급제 (농민의 기호농약주문)
(4) 관주도형 방제체제 (책임독려와 농약과용)	→	농민자율방제강화 (기간방제 실시철폐)
(5) 공동방제단 형식운영 (농약의상 공급의 보장)	→	시범방제단 중점활용 (읍면당 2-3개 육성)
(6) 용역방제단 부실유도 (기술 및 장비등 부족)	→	새마을 청소년 방제단 육성 (읍면당 1-2개 중점지도)
(7) 방제비 지원의 과다 (국고적자 64억, 도비 15억)	→	방제기구의 간접지원 (시범 및 청소년방제단 위주)
(8) 농협편중의 농약공급 (기술부족과 재고누적)	→	시판확대와 유통질서확립 (적정물량 및 가격조정)
(9) 약종다양과 과대광고 (약종명과 사용법 난해)	→	품목고시제 및 기술보급강화 (품질관리와 안전사용 철저)
(10) 법규 및 관리행정 미급 (검사, 생산, 유통질서 관례화)	→	관계법규개정과 행정능률화 (생산, 판매, 품질관리의안정)

2. 基幹防除技術의 確立

기간방제라는 새 용어는 주요 병해충을 적기에 동시 집단방제 하는 것을 뜻함인데, 당면한 수도병해충 방제의 효과와 횡수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농약생산과 공급 판매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대책과 협동이 있어야 하겠다.

지금까지의 병충해방제 → 병해충 방제 → 항공방제 → 공동방제와 같

은 방제개념은 적기방제 → 동시방제 → 성력방제 → 집단방제의 방법으로 적용되어 개별방제 → 용역방제 → 기간방제 → 종합방제의 체제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간(基幹)방제는 다음 단계 원칙을 적용하여 적기에 적제(適劑)를 적량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종의 생산공급과 알맞은 사용기술의 보급에 메이커의 노력도 집중되어야 하겠다.

- (1) 묘 판 기 (5月중~5月하) ⇨ 묘도열병+애멸구, 기타
- (2) 본답초기 (6月상~6月하) ⇨ 잎도열병+이화명충, 기타
- (3) " 전기 (7月상~7月중) ⇨ 잎도열병+문고병, 기타
- (4) " 중기 (7月하~8月상) ⇨ 목도열병+문고병, 멸구류
- (5) " 후기 (8月중~8月하) ⇨ 이삭도열병+이화명충, 기타
- (6) " 말기 (9月상~9月하) ⇨ 가지, 알도열병+멸구류, 기타

3. 研究指導의 強化

병해충방제의 제도적 개선과 기간 방제의 기술확립을 위해 필요되는 시험연구와 지도의 기반은 대단히 허약하나 농민들의 능력과 경험은 더욱 부족하니 이에 대한 중앙 단위의 철저한 교육 훈련과 지방단위의 광범위한 현지 시범지도를 조속히 실시하여 우수방제단위에서의 성과에 대한 파급효과를 올리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 새마을영농회단 위별로 방제계획과 농약 및 방제기구와 방제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지도 계몽이 시급하고 약종의 선정에 있어서는 약효, 약해,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에 관한 검토를 소홀히 하지 말것이며 유관 기관도 이에 관해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과 수익성을 등한시한 지금까지의 기술지도의 맹점을 농약 사용에서부터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 농민들은 약효와 방제비 절감 등을 이유로 수종의 농약을 분별없이 혼용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농도나 회수의 사용 뿐만 아니라 제초제까지 잘못 혼용하여 심한 약해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허다하며, 사용상의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를 판매상이나 생산업체의 책임으로 돌려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부정농약이니 과대광고니하여 고발이나 진정소동을 일으켜 결국 제조업체가 회생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시키는 악습도 조성되고 있다.

농약은 잘쓰면 약이 되고 잘못쓰면 해가 된다는 사실과, 부정농약이 아닌한 약효와 약해와 공해의 책임은 사용자인 농민 스스로에 있다는 것을 농약안전 사용과 함께 지도계몽 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약과 작물보호에 관한 연구시험은 질적, 양적으로 다른 분야에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10년전부터 준비되어온 작물보호 연구소의 설립도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농약의 개발이나 약제방제에 관련된 국가적 시험연구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의

증가는 참으로 안타깝고, 또 1천억 원 이상의 산업규모로 20개의 기업체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농약학회나 연구회와 같은 전문적인 연구조직도 없으며, 다만 농약공업협회를 모체로 하여 겨우 이 기술계몽잡지 하나를 발간하는데도 급급한 실정이니 참으로 농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약기업은 대성분발해야 하겠다.

Ⅲ. 農藥管理行政의 刷新

농약관리법과 관계법규 등의 전면적 개편에 따라 농약업체는 다시 한번 시련을 겪게 되겠는데, 특히 품목고시와 품질관리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또 이에 큰 저항없이 얼마나 적응해 나갈 것인가도 의문시된다. 농약등록 및 허가를 위한 시험 검사의 방향과 방법, 적용병해충 및 사용법의 규정과 기술지도, 제조생산과 판매 및 유통질서, 수습제회과 가격문제 등에 관련되는 관리행정에도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국과 업체와 농민이 대화와 협조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다만 행정적 당면 과제나 책임을 해소하기 위해 법규나 직권의 남용으로 기업의 지도육성과 산업의 정상발전에 희생이 강요되거나 직권의 시너화가 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좋은시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음 몇가지로 요약하여 참고하여 보고자 한다.

1. 法規改正과 企業育成

1957년에 처음으로 농약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1969년의 부분적 수정을 거쳐 1978년에 안전사용과 공해방지를 골자로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또 다시 品目告示 및 品質管理와 安全使用 등의 보완을 위해 전면 개정이 진행되어 1981년 초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법운영과 적응 여하에 따라서는 농약업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재의 수입 및 가격의 협상이나 상표 및 특허의 사용권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경쟁은 더욱 심각해 질까 염려되며, 업체간의 이해가 엇갈려 협조단결이 더욱 약화되고 광고선전과 판매촉진을 위한 시간적, 물질적 낭비는 보다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니 과연 자율과 협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지 또 당국은 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무슨 대책과 실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적자생존의 운명에 맡겨지는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본다.

법규를 선진국에서 모방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나라의 제도와 실정을 무시 할수는 없는 것이며,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농약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새로운 개정법안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없애버린 農藥審議會를 부활시키고 등록시험을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등으로 이관케 하고, 국립농업 자재검사소는 검사업무와 품질관리를 전담케 한것은 발전적이라고도 하겠으나 그 실효를 얻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우선 기대를 걸고 싶으며, 특히 농약심의회는 농약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농약행정의 당면시책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십분 활용되길 열망하면서 작물보호와 농약관리의 효율적인 행정체신의 열쇠로 작용되었으면 한다.

2. 品目告示와 品質管理

현재 약 55종의 농약명과 230여종의 품목명과 400여종의 상표명이 허가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상표명을 농약명으로 하여 살충제만 2,195종, 살균제 745종, 살충살균제 540종, 제초제 412종, 살서제 97종, 생장조정제 47종, 기타 214종으로 합계는 4,250종에 이르니 우리의 10배에 상당한다.

농약의 종류가 많고 사용법이나 가격 등이 다양하여 농민의 사용에 불편이 많다는 여론에 못이겨 앞으로는 어느 제조회사나 다같이 고시

된 약제를 만들수 있게한다는 것인데, 품목고시의 명분과는 달리 원료와 시설과 기술이 같다고 해서 상표명이나 품질과 가격이 모두 동일하게 되고 농민의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때까지의 출하전 제품의 발취검사를 없애고 제조회사의 자체검사로 자율화하고 유통과정의 단속검사에 철저를 기하려하는데 시료채취의 방법이나 검사분석의 기술과 판정 및 행정적 조치등에 더욱 높은 수준과 신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계의 낭비와 희생은 더욱 강요될 것이며, 기업의 발전과 산업의 장래는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약법이라도 운용에 따라서는 해로운 것이 없을 수 있고 좋은 제도라도 시행을 잘못하면 무익한 경우도 많으니, 당분간은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알고 서로 참고 상호하며 이해와 노력과 협동에 최선을 다해봐야 하겠다.

다만 정당한 생산품에는 합당한 가격이 적용되어야 하겠으며, 필요한 개발과 보급이나 품질관리에 소요된 투자나 권리에 대한 대가는 당연한 이익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지 않는한 품목고시의 실효와 품질관리의 자율도 수포화 될수도 있을 것이며, 농민의 편리와 유통질서 개선에 역행하거나, 농약산업 발전

에 장애를 초래케 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3. 試驗檢査와 流通秩序

농약에 관한 제법규와 공정규격, 안전사용기준, 검사방법, 등록 및 허가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할 경우, 농약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그 의결을 거치게 하면 현재까지의 등록시험과 허가 내용 등에서의 문제점 등이 대폭 개선되고 안전사용과 기술보급에 관한 시비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믿어진다. 다만 시험 수행기관이나 담당자의 실시 방향이나 능력에 따라 형식화나 수준이하의 질적저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조업체 스스로가 연구시험을 강화하고 상호 보완적 작용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노력을 다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종류의 대상병해충에 대한 시험으로 10종의 작물이나 다른 병해충에 모두 적용시키기도 어렵겠지만, 작물별로 적용병해충 별로 빠짐없이 모두 시험할 필요 또한 없는 것이며 외국의 성적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겠지만 적용 못할 이유가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니 과학적인 판단과 실용적인 수준에서 융통성있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겠다.

1981년부터 특히 수도용 농약의

농협공급에 있어서는 농민이 원하는 약종을 새마을 영농회의 공동구매 신청에 따라 적기에 적량을 확보 공급한다는 원칙이 세워지고 있는 듯하나, 현실적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역시 행정 및 지도기관의 참여와 선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협직원이나 판매관계자는 특히 새로운 농약이나 그 사용법에 대한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하겠고, 당면한 재고품의 선입선출이나 전수배의 구호도 실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겠으며, 무이자 외상공급이나 농약대보조등을 영농자금이나 방제기구로 간접지원 하는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며, 약효와 수익이 좋다고 적기와 적제를 무시한 형식적인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극고나 자재를 낭비케 하는 사례도 시정되어야 하겠다.

앞으로, 농약은 부족해야 귀중한 줄 알게 될 것이고, 값이 비싸야만 잘못 사용하는일이 줄어 질 것이니 생산업체는 국가와 기업과 농민의 공통적인 이익을 위해 필요한 약종과 약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하고 피동적이었던 생산 판매에서 능동적인 출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단결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그 실천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하다.

Ⅳ. 農藥產業의 體質診斷

1980년대초의 우리나라 농약의 총 수요량을 유액제 20,000톤, 입분제 170,000톤, 수화제·기타 10,000톤으로 합계 약20만%이 될 것으로 보며 이는 현재 가격으로 1,300억원에 상당하는 것이다. (실물량)

1979년도에 이미 생산 및 확보와 출하량이 20만톤(성분량 15,000%)을 돌파하여 1천억에 육박하였으며 각사 공히 유사이래의 호경기를 맞아 인력과 시설을 다소나마 보충할 수는 있었지만, 당년의 재고 이월량은 총확보량의 20%에 상당하여 전년 대비 217%의 높은 비중으로 130억원 이상이 사장된 것을 주시해야 할것이다.

1980년에는 생산 및 확보를 168,983%, 출하는 146,608%(실물량)으로 크게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원인도 중시되지만 설상가상으로 강우와 저온의 연속으로 병해충의 발생과 농약사용이 크게 감소되었고, 특히 입분제의 재고는 30~40%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년도 뿐만 아니라 금후의 농약기업에 크게 적신호를 울려 주고 있음을 암시한다.

업계는 최근의 정부에 의한 농약 분야 전면감사와 농약사건 등의 여

독으로 의욕과 용기를 상실한 듯 좌절감속에 위축되었으며, 싹터나오던 체질개선의 일출기도 시들어 긴급히 대처해야할 당면과제에도 돌과 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당국의 정책적배려나 해결책은 물론 지원의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은채, 업계의 자율과 자립과 요행만을 기대하고 무책을 상책으로 느끼게 하고 있다. 눈앞의 연명책이나 회사별 노력만으로는 당면한 농약기업의 살길과 농약산업의 정상적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으나 공동체적 대책은 수립되고 있지않다.

앞으로의 식량위기에 직면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위험은 농약산업의 부실로 크게 증대 될 것이므로 새시대 새질서의 시작과 함께 농약 기업에도 혁신과 체질조절을 위한 협동과 분투의 기운이 생겨 전화 위복의 계기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1. 研究開發과 技術普及

새로운 농약 1종의 개발에는 평균 10년에 가까운 세월과 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나 그 수는 전세계적으로 한해에 10종 미만임으로 새로운 주성분의 새농약의 개발보급은 더욱 어렵게 되었음으로, 우리의 실정에 알맞게 현재 가능한 성분을 더욱 이용율을 높이고 약효와 안정성과 경제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 특집 · 농약 산업의 비상대책 ◇

과거 5개년간 새 품목으로 허가된 상품수는 200종이며, 이미 재허가가 되었거나 금후 수년내에 재허가 될 200여종을 합하면 약 400종이 되겠는데, 앞으로 혼합제나 복합제의 증가가 현저해 질 것이며, 품목고시에 따르는 상품수의 확장과, 회사별 품질의 평균화와 관리를 위한 문제와 연구과제는 더 많아질 것이다. 특히 혼합분제의 등록에 있어서는 기존품목간의 실용성 위주의 검토하에 상당한 제한을 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혼합분제의 홍수사태가 일어나 생산공급과 유통질서의 유지뿐만 아니라 지도와 방제작업면에서도 혼란이 많을 것임으로 미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금후, 품질관리의 자율화에 따르는 기술인력과 시설의 확보와 제조 및 생산을 위한 연구시험에도 배전의 투자와 노력이 소요될 것이 확실시되나, 이에 대한 보상의 길은 물론 암담하다. 농민기호농약의 신청 및 공급에 따르는 기술보급과 관측 활동에도 가일층의 부담이 있을 것이나 농약값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시된다.

대농민 보급활동에 있어서도 농약과 병해충과 시장에 관한 지식은 더욱 필요시되며, 각 제품별로 적지(適地), 적작(適作), 적시(適施)에

치중하여 부락단위까지 세미나와 전시포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농협이나 시판상에 맡기는 판매에서 농민이 원하고 쓰게하는 판매로 전략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고 입이나 선물이나 거래관계보다는 약효와 수익과 안전성에 관한 농민의 자신감 부여에 부심할것이나 과다선전이나 경쟁판촉의 자제는 더욱 필요시 된다.

2. 金利 및 換率差와 資金難

물가와 금리는 기름값을 따라 30도의 비탈길을 한없이 올라가고, 환율마저 단적이 되어 밤낮 없이 줄달음질을 치고있으니, 재고와 부도에 발이 묶인 기업은 자금난에 신음하게 마련이다.

농약수급계획과 생산공급을 촉구해온 관계당국은 기상이변과 흉작으로 농약사용의 감소와 약값 지불능력이 저하된 것이니 업체가 도산된 다해도 대책이 없다는 사고방식이나 무사 방관하는 자세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농협이 내년봄에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을 100억원 정도내에서 앞당겨 구매조치 함으로서 공장 재고를 대폭 감소시켜 생산업체를 자금부담과 금리압박에서 숨구멍을 열어주게 하고 금후의 수급질서와 가격안정 뿐만아니라 품질관리와 농가의 이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타산업에 못지 않는 경기 부양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농약선도자금을 더욱 적기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비상대책이 수립되어 조속히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한편 생산업체는 1979년과 1980년에 걸쳐 과잉생산과 경쟁출하에 따른 곤경을 깊이반성하고 이를 교훈삼아 앞으로 적정물량의 생산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와 가격조정에 지혜를 모아 상호 협동 단결하여야 하겠으며, 또다시 10~20%의 누적된 공장재고, 30~40%의 유통재고와 총매상의 10%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으로 기형적인 경영과 금리부담의 악순환과 회복불가능의 경영난에 모든 기업이 두손을 들고 농약산업을 총파산의 비운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3. 在庫 및 移越과 運營策

농약의 연간수요 실물량은 15만톤(900억원)에 미달하나 공급은 20만톤(1,300억원)으로 오히려 초과되고 있으며 공장 및 유통과정의 재고 이월을 합하면 400~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이에 대한 급후의 대책은 공급량을 재고량을 포함한 총수요량의 110%선 이하로 격감시키고 농약가격을 120~130%이상선까지 인상조치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981년도는 실제 생산을 만

튼선에서 묶어 총확보량을 금년도의 재고출하 포함 15만톤 정도로 낮추고 각생산업체의 외형은 금년도 수준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원부자재와 물가의 상승을 등으로 미루어 1981년도 농약 가격이 대폭상승이 불가피한 것이므로 농협은 금년도 재고를 금년도 가격선에서 우선 구매조치함이 농협자체는 물론 생산업체와 농민에게도 다같이 크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므로 국가이익과 농약산업의 육성발전의 차원에서 긴급한 대책수립과 선처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농약기업은 지금 유사이래의 비상난국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일의 농약산업은 폭풍우 전야의 침울속에서 지혜로운 자율과 인내있는 분투를 구상하고 있지만, 당면한 재고과다와 자금압박, 환율차액과 금리부담 물가고와 대금수급난 등은 자조와 협동의 여유를 주지 못하게 하여 속수무책으로 요행만 바라고 있는 실정에 있다.

새해부터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기업육성과 산업발전에 다해야 하겠다고 하면 되고, 안하면 안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국가 이익이라는 전제하에 때와 방법을 가리는 현명도 있어야 하겠다.